

원데이 언법

2017년 지방직 7급

정답표 (B 책영)

- ①②③①① ③④④②③
- ③①④②④ ③③④④②

01

①

헌법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02

②

공무담임권이 침해된 판례(多)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케 하는 규정들(위헌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등) ↔ ‘집행유예’(합헌) **【주의】** i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합헌 - 헌재 2013.07.25. 2012헌바409). ii “위헌결정이 있는 후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면서 다른 사유로 당연퇴직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률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iii “집행유예시 당연퇴직의 경우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합헌)”

03

③

■ **헌재판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다.”(헌재 2010.05.27. 2005헌바346).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이

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cf>**법인도 인격권의 주체(O)**. **사자(死者)도 인격권의 주체(O)** / 친일파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인 경우에 사자의 명예권을 제한하기는 하나 **유족(후손)들의 인격권도 제한(O)** (헌재 2012.08.23. 2009헌가27) /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인격권이 아닌 ‘행복추구권’에 근거> ★

04

①

■ 근로의 권리의 주체 : ①사회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X, 자유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 O(<cf>외국인의 산재보호법상 요양급여청구권(O),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평등권 침해(O) (2004헌마670),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O),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O)) / ②“헌법 **제32조** ...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헌재 2009.02.26. 2007헌바27) <cf>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은 개인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헌재 1999.11.25. 95헌마154)

05

①

성범죄 의뢰인 취업제한 사건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헌 -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X)**,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O), 평등권 침해(X), 위 취업제한제도를 법 시행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X)) (헌재 - 2016.03.31. 2013헌마585) □ “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와 보호범의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 평등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의뢰인의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3헌마585) -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최초의 판결 ★★★

06

③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 '부재자투표의 투표시간'을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오전 10시 부분**(잠정적용 헌불 - 선거권 침해(O), 평등권 침해(O)) ↔ '오후 4시 부분'(합헌) (헌재 2012.02.23. 2010헌마601) [cf] i 그 후 '사전투표소'는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에 닫는다'로 개정(공직선거법 §155②), ii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공직선거법 §218의17) ★ ★★

07

④

교도소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위헌) **【주의】** i 직접성 : 교도소장의 금지물품검사 재량규정인 법률X, 수용자의 '봉함'없는 제출의무 규정인 시행령O, ii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도 통신비밀의 자유의 주체O (헌재 2012.02.23. 2009헌마333) ★

08

④

① (X)

구분	상설 여부	위원정수	임기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50인 (국회법)	1년	본회의에서 선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15인 (국회법(O),(규칙(X))	2년	본회의에서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비상설	13인 (인사청문회법)	존속시기 동안	위원회에서 호선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외)	상설	국회규칙	2년	본회의에서 선출
정보위원회	상설	12인 (국회법)	2년 (의원의 임기(X))	본회의에서 선출

② (X)

③ (X)

국회상임위원회(16개) : 1.국회운영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속), 2.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헌법재판소 등 속), 3.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속), 4.기획재정위원회, 5.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외교통일위원회, 8.국방위원회, 9.안전행정위원회(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속), 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보건복지위원회, 13.환경노동위원회, 14.국토교통위원회, 15.정보위원회, 16.여성가족위원회 (**【주의】**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상임위원회 X)

09

②

	1~3공헌법	4공헌법 (72년)	5공헌법 (80년)	현행헌법
감사	헌법	X	X	헌법상 부활
조사	X	국회법	헌법 신설	헌법상 존속

10

③

■ 대법원의 部 : ... [cf]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위헌소원 포함(O),위헌법률심판(X))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과반수(X))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후 30일 경과시까지 각하결정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으로 간주한다(헌재법 §72) / 헌법소원 각하 or 회부결정시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등)통지하여야 한다(헌재법 §73) ★

11

③

■ 명예훼손과 면책특권 : **대법판례**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12

①

■ **헌재판례** ①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②“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찰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3

④

■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헌법] ①**법률의 위헌결정**, ②**탄핵결정**, ③**정당해산결정**, ④**헌법소원에서의 인용결정** → 정족수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함(**권한쟁의심판은 불포함!**) → 7인 이상 출석 + 종국심리에 참여한 과반수 찬성 / [헌재법]에서 추가 → ⑤**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위헌이 아님) / **【주의】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라도 ①법률의 위헌결정(헌법)과 ②판례변경사안(헌재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14

②

■ 설치 :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or 부대 등 But, 수사기관X,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부대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 /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 /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 심판관은 관할관이 임명하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청한다(군사법원법)**

15

④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 판례(多) 이외 모두 합헌

16

③

■ 제3자 소송담당 인정여부(부정설) : **헌재판례** “제3자 소송담당’은 (국회의원 다수이든 소수이든)**예외적으로 ‘법률(헌법(X))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부정설(**인정할 필요성은 긍정!**)).”,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or 전시작 전통제권 이양시기의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이 체결된 경우,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국회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cf] i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2013헌라3), ii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3헌라3) ★

17

③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8

④

■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 **헌재판례**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12.28. 2005헌바59)

19

④

헌법 제34조 관련 기본권이 침해된 판례(多) 이외 모두 합헌

20

②

평등권이 침해된 판례(多) 이외 모두 합헌